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8년 2월 27일

3. 제안사유

-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조)
- 나. ‘공판’ 을 ‘변론’ 으로 개정 (안 제2조)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
 - ‘당해’ → ‘해당’ (안 제3조)
 - ‘가름한다’ → ‘갈음한다’ 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-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라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“산하기관장” 을 지방자치법 제3절에 따른 “소속 행정기관” 으로 개정함.

※ **지방자치법**

제3절 소속 행정기관

제113조(직속기관), 제114조(사업소), 제115조(출장소),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, 제116조의2(자문기관)

○ 안 제2조에서는

1) “공판”을 “변론”으로 개정하고,

“현장검증시”를 “현장검증 시”로 띄어 씀.

- “공판”은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용어이므로, 행정·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는 “변론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2) 또한, “여비, 현지교통비, 식비, 숙박료”를 “여비, 숙박료”로 개정함.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, 여비는 ‘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교통비, 식비, 숙박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.

※ **공무원 여비 규정**
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.

- 다만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여비를 운임(현지교통비)과 식비로 규정하고, 숙박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에서는 도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“여비, 숙박료”로 개정함.

※ **민사소송비용규칙**

제3조의2(증인등의 국내여비·숙박료) ① 증인 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.

③ 증인 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예납함으로서”를 “미리납부함으로써”로, “가름한다”를 “갈음한다”로 개정함.

- 본 조례안은 띄어쓰기,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타당하다고 사료됨.